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권 영 숙 의원)

의 안 변 호	21-2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2.

발 의 자 : 권영숙, 강명숙, 김기석
김성희, 김종선, 김진천
이필레, 최은하

1. 제안이유

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,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라. 추진사업 및 지원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6조, 안 제7조)

3. 관계 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4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

5. 입법예고: 2021. 2. 26. ~ 2021. 3. 2.

6. 조례안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협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생활주변 위험수목”(이하 “위험수목”이라 한다)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, 바람, 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쓰러짐 등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.

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”라 한다)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,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.

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,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

건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등)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목표 및 방향
2.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
3. 수요조사,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
4.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 대상지)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,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.

1. 임야,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·관리해야 하는 지역
2. 30세대 이상 공동주택, 대규모 사업체 부지, 공공기관 관리 지역
3.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,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
4.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

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

가. 죽은 나무나,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

나. 나무줄기 부패목,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

다.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(生育)으로 강풍,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

2.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

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④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」 “대지안의 조경” 등 관련 법규 및 인·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6조(추진사업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(나무병원 등)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

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. 1. 1.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

지원대상지	지 번: (지목 :)					
	소유자: (연락처:)					
신청인	주소					
	성명		연락처			
	소유자와의 관계:					
신청사유						
대상수목	연번	나무종류	나무높이(m)	가슴높이지름(cm)	지원내용	비고
※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, 추가 별지 작성 ※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.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※ 지원내용은 제거,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						
기타 요구사항						

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: (인)

붙임 :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현황 사진

○ 위치도

전경사진	근경사진

[별지 제2호서식]

위험수목 처리 동의서

- 수목위치: 서울특별시 마포구 00동 000
- 수종 및 수량:
- 정비사유:
- 정비내용:

상기 본인은 마포구 000로 000동 0000빌라 000동 소유자로 여름철 태풍, 폭우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(제거, 가지치기 등)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. . .

소유자: (인)

(연락처: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[관 계 법 령]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: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작업비용

나. 관련조문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제4조(지원계획 등) 제2항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추진목표 및 방향 2.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
3. 수요조사,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.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근거규정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제2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미첨부사유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나. 소요예산

1) 위험수목 제거 100주: 50,000,000원(2021년 위험수목 정비공사 품셈 적용)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남현진
연 락 처	02-3153-9595